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산 및 간접비 지침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적용범위)	1

제2장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제4조(예산편성의 원칙)	1
제5조(예산확정)	1
제6조(추가경정예산)	1

제3장 산학협력단 회계연도 결산

제7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2
---------------------	---

제4장 간접비의 관리·운영

제8조(간접비의 사용범위)	3
제9조(회계기관)	3
제10조(회계관련 서류 관리)	3
제11조(간접비의 징수대상)	3
제12조(간접비의 징수율)	4
제13조(간접비의 징수절차)	4
제14조(보상금의 지급)	4
제15조(간접비의 전용 및 이월)	4
부칙	5
별표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 예산 및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간접비”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예산 및 간접비 등은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②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적용하는 법령, 규정·지침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그 외에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제4조(예산편성의 원칙) ① 간접비를 포함한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서는 예산편성과목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다른 목적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② 직전회계연도 수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수입·지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⑤ 예산편성과목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예산확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예산(안)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전 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서(「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0조에 따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대학 총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경정예산)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대학 총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산학협력단 회계연도 결산

제7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등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을 사용한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을 통해 확정되고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보고서(간접비 포함)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대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 산학협력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보고서를 대학 총장을 경유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업연도 말일로 한다.

제4장 간접비의 관리·운영

제8조(간접비 관리 및 사용범위)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간접비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간접비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간접비의 집행은 단장의 관리하에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지출하며 불요불급한 사업, 소비적 집행을 억제하고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간접비는 국방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개발 준비금
2.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비용, 사업단/연구단운영비, 기반시설·장비구축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학생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 지원금
3.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제9조(회계기관) ① 계약관 :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를 함(산학협력지원담당)

② 지출관 : 계약관이 행한 원인행위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출 업무를 함(세무회계담당)

제10조(회계관련 서류 관리) ① 간접비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자료, 영수증 등 원본은 연구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한다.

② 간접비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접비의 징수대상) ① 간접비의 징수대상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해 대학 교원이 지급 받는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원이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학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해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간접비의 징수율) ① 간접비는 정부의 간접비 고시에 의한 기준으로 계상하여 징수 하되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별표 1]

②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한다.

제13조(간접비의 징수절차) 간접비의 징수는 선금 및 완성금 입금시기로 하고, 간접비 통

장에 입금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① 간접비 재원수입에 기여한 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당해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제15조(간접비의 전용 및 이월) ① 산학협력단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과목 상호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26. 04. 15.)

이 지침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간접비 / 일반관리비의 계상기준(제11조)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비고
정부지원 연구·용역 과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서 정한 기준 : 6%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 리비율 및 이윤율) 17. 기타 용역 : 100분의 6 이내	기획재정부령 제533호, (2016.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 한 기준 : 17%이내 제12조(연간개발비의 지급)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연구과 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로 구성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는 비영리 법 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 비 제외)의 17 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u>간접비 산출 미적용 기관으로써</u> <u>현재 최저고시비율 5% 적용</u>	대통령령 제26729호 (2015.12.22.)
민간지원 연구·용역 과제	직접비(인건비+경비)의 20% 이내	
기 타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지원 연구비와 동일한 기 준으로 간접비를 계상	